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30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10. 7.
판 결 선 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9. 5.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233,509,610원, 지방교육세 44,923,39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0,000,000원, 지방교육세 2,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취소하고,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9. 3.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4년 정기분 재산세 1,262,544,020원, 지방교육세 252,508,80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0,000,000원, 지방교육세 2,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 9. 5.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위 원고 소유의 [redacted]시 C 외 63건 토지 237,806㎡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정기분 재산세 233,509,610원, 지방교육세 44,923,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 9. 3. 원고 B 주식회사에게 위 원고 소유의 [redacted]시 D 외 126필지 토지 1,315,485.5㎡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정기분 재산세 1,262,544,020원, 지방교육세 252,508,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가, 나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골프 코스로 사용되는 토지 및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형보전임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헌인 이 사건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근거 조항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재산세중과세제도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즉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를 중과하는 규정으로, 이와 같은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제도는 조세정책상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문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당시 별장에 대하여 6%, 골프장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였고, 1974. 1. 14.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제정하면서 고급선박, 고급오락장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추가되고 기존의 중과세율이 5%로 변경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당초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대중골프장, 간이골프장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중과세 제도의 도입 이후 경제·사회·문화 환경이 변화함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라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세율, 요건 등에서 조금씩 개정이 이루어졌는바, 현재는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만이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남아 있고, 그 중과세율은 4%이다. 한편, 대중골프장의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골프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0.2~0.4%의, 건축물은 0.25%의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3) 이하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이하, 아래에서 언급되는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지칭한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대중제 골프장의 그것과 달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1)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 하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고(헌법재판소 1996. 8. 29. 92헌바46), 재산세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입법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중과세 적용 여부, 중과세 대상 선정 및 그 세율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고 할 것이나(헌법재판소 1996. 8. 29. 95헌바41), 그 내용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 즉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타당하다.

2) 앞서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본 바와 같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제도는 사치성 재산의 소비 및 취득을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다른 재산의 취득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일반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 평가적인 개념으로서 결국은 건전한 판단능력을 갖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으로부터 약 40년이 지나 당시에 비하여 경제사정이 현저히 좋아졌으며, 종전과 달리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분류되고(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12년 기준 20세 이상 성인 중 골프인구 수가 4,707,708명에 달하여 전체의 14.2%를 차지하는 등 골프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골프장의 건설에는 방대한 토지와 시설이 필요하므로 골프장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한정된 자원이 생산적인 분야에 이용되지 못하게 됨은 물론, 시설부지 조성 과정에서 넓은 면적의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악화 및 생태계 파괴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인구에 비하여 국토면적이 적어 만성적인 토지 공급부족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무제한적으로 골프장이 증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연적 조건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아니하므로, 골프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회원권을 분양하여 그 차입 자금으로 건설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골프장 조성이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고, 실제로 중과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회원제 골프장의 수는 108개에서 22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구입한 특정계층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에게 사치성 시설이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이에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과 고급오락장 등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양자를 모두 사치성 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원고들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중 약 70~80%에 달하는 인원이 회원권이 없는 일반 대중이어서 대중제 골프장과 이용객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골프의 경우 통상적으로 3~4명이 조를 이루어 골프장을 이용하고 이들 중 1인만 회원권이 있으면 골프장의 예약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회원 이용객 중 대부분은 회원과 동반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이 있거나 최소한 회원권이 있는 지인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 경우에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회원권과 무관하게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회원제 골프장에서 비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주중에 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프장 이용인원이 적은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할 뿐 대중제 골프장과 같이 비회원인 일반 국민에게 그 이용이 개방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대중제 골프장의 그것과 달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단서 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본다.

대중제 골프장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운영되면서 체육기회 제공 외에 재산으로 인식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 원형보전임야(원형으로 보전되는 임야를 줄인 말이며, 원형지라고도 한다)도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유무형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재산으로서의 특성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누구나 골프장 경계에 접근할 수 없어 원형보전임야가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인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자만이 실질적으로 원형보전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점, 인구 대비 토지 면적이 부족하고 통상 산지와 임야를 상당 부분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대형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는 국토의 특성,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폐쇄형 회원제 골프장으로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매우 넓고 이와 달리 원형보전임야는 그 중의 일부에 불과한 점, 잡종지, 나대지 등을 임야로 변경한 다음 이를 보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 형질 변경의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초과한 임야를 보존하게 하면서 원형보전임야를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제약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과정과 개발행위 최소 원칙을 놓고 보면 자연과 국토환경에 대한 국가와 토지소유자 등의 헌법에 따른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자 배려인 점,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에 처음으로 규정하여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원제 골프장 개발 단계에서 원형보전임야의 의미와 기능, 골프장의 법령상 입지기준, 개발행위 대상과 그 한계 등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단서 조항이 위헌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형보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헌법에 부합하고,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헌법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상과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보면,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 조항이 대중제 골프장이나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는 경우와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여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원칙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회는 납세의무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가지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유·사용·수익·처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96헌가19등;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2)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1000분의 40이라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납세자에게 과중한 것이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는 위와 같은 중과세율이 전혀 수익을 얻을 수 없게 하는 강한 규제로서 골프장의 개장 및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의 문제라 할 것인데, 최근 골프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재산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골프장은 시설규모가 방대하여 토지 취득이나 골프장 조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고정자산 취득원가가 높다는 사업적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소요자금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아닌 차입자금으로 건설할 경우(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이 이에 해당한다)에는 이로 인한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중과세가 골프장의 손익발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장경제 하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손익발생 여부는 결국 경제적 선택의 합리성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골프장 사업을 운영할지 여부에 대한 기업주체의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일 뿐,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조항이 곧바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재산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득 발생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9. 25. 2006헌바111).

원고들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0조 등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등 결정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로 인하여 21년만에 원본이 몰수되는 효과가 있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재산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사건과 같이 '이득에 대한 과세제도에서 원본 자체가 잠식되는 경우 수득세인 토지초과이득세의 본질에 반하여 재산권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골프장에 대하여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골프장의 원활한 설립이 간접적으로 억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고,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제 골프장의 재산세율과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에 차등을 둠으로써 골프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접근이 용이한 대중제 골프장을 택하도록 하는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인이 된다고 볼 것이며, 실제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회원제 골프장은 108개에서 228개로 약 2.2배 증가함에 그쳤는데, 대중제 골프장은 42개에서 232개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충분히 적합한 수단으로 보인다.

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경우 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당해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세율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바와 같이 1000분의 40이라는 중과세율 자체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사회정책상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사치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삼았을 뿐, 대중제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치성 재산의 억제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국가수입의 증대라는 목적을 추구하되, 중과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가급적 적게 하고 골프장 운영을 희망하는 국민으로서도 선택에 따라 중과세라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 역시 유지되고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1) 동일 쟁점의 관련사건인 이 법원 2014구합23095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E이 이 법원 2016아10199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11. 18.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별지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제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4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